
2020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2020. 3. 2.



국민권익위원회

순서

I. 반부패 청렴정책 성과와 보완	1
--------------------------	---

II. 2020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 추진 과제	9
-----------------------------------	---

1. 컨트롤타워로서의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 강화 ·	12
2.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13
3.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운영 ..	16
4.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 개선	18
5.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20
6. 행동강령 내재화 및 이행점검 강화	21
7.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	25
8.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27
9.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활성화	32
10. 공직자·국민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추진	35
11.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의 구체적 성과 확산	41

순 서

12.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시행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 .. 46
13. 부패·공익신고 사건처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50
14.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로 사회 전반의 자정노력 촉진 .. 52
15.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55
16.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57
17.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반부패 업무 혁신 .. 59

[협조사항]

1.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63
 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및 정책제안 67
 3.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 감사 면책 73
 4.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75
- 붙임1 :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76
- 붙임2 : 분야별 업무담당자 82



반부패 청렴정책 성과와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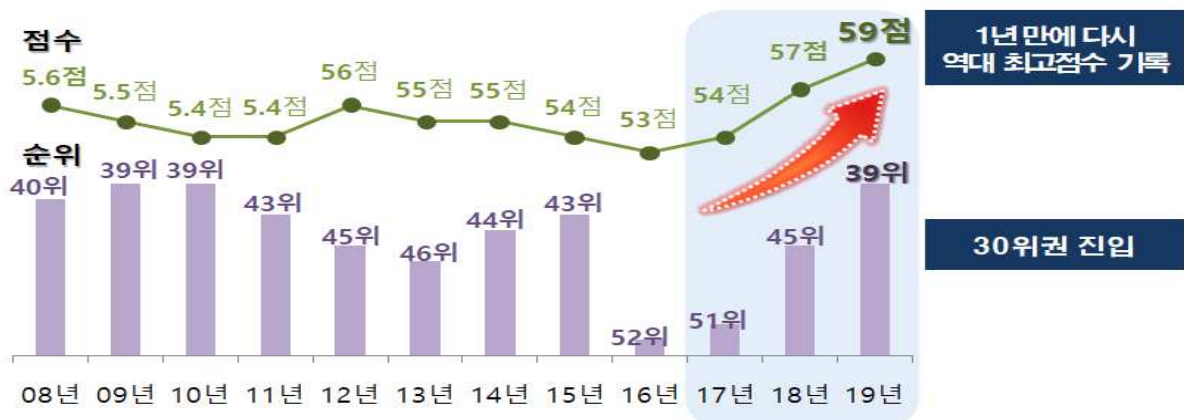
I. 반부패 청렴정책 성과와 보완

1 청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기틀 마련

□ 부패인식지수 지속적 상승 [’19년 부패인식지수(CPI)]

-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상위 21% 수준)
 - 전년대비 평가점수는 2점 상승, 국가순위는 6단계 상승
- ※ OECD 36개국(평균 67.8점) 중 27위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8~’19년) >



□ 세계 상위 수준의 청렴지수 기록 [’19년 공공청렴지수(IPI)]

- ’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 기록

< 공공청렴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 개요>

- 발표기관 : 유럽 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 발표배경 : 부패통제 현황·발전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위해 개발
- 조사대상 : 117개국(’19년) ※’15년부터 격년 발표
- 지수구성 : 사법부 독립성, 행정적 부담, 교역 개방성, 예산 투명성, 전자적 시민권, 언론의 자유 등 총6개 지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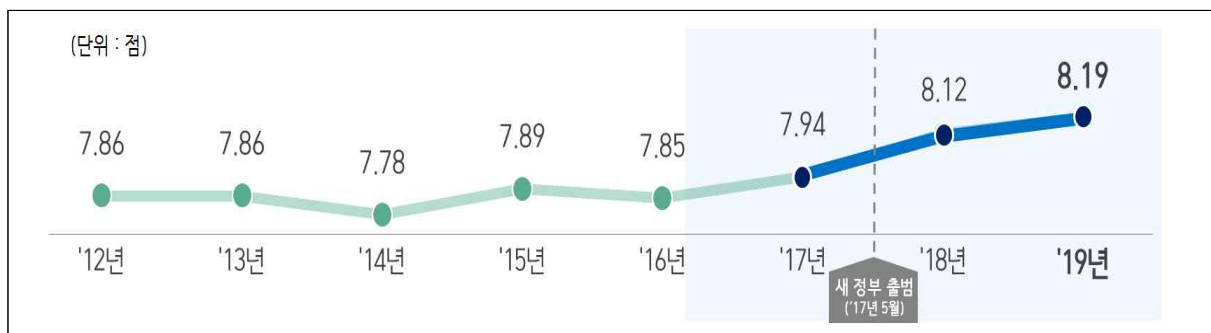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향상

□ 공공기관 청렴 수준은 꾸준한 개선 추세 ('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추정)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균점수가 3년 연속 상승하였고 기관 유형별 청렴 수준도 대체로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

※ 전년 대비 평균점수가 소폭 하락한 중앙행정기관(0.11점 하락)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

< 청렴도 점수 추이(2012년~2019년) >



□ 공공부문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청탁금지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원·협찬('19.7.), 주차편의 제공('19.9.) 등 금품등 제공 관행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통보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답변율의 안정적 유지('19.10월 현재 99%), 빈발질의 기관, 기업·민간단체 대상 맞춤형 교육 및 유권해석 사례공유

< 청탁금지법 관련 인식도 조사 주요 결과('19.8월, 한국리서치) >

- ① 법 시행이 부조리·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
: 국민 75.4%, 공무원 92.4%, 공직유관단체 91.3%, 교원 85.8%, 언론인 62.4%
- ② 법이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 국민 91.2%, 공무원 93.8%, 공직유관단체 96.3%, 교원 93.5%, 언론인 86.1%
- ③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 접대, 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
: 국민 79.5%, 공무원 87.2%, 공직유관단체 87.3%, 교원 83.5%, 언론인 78.7%
- ④ 법 시행 이후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 감소하였다
: 공무원 82.2%, 공직유관단체 80.0%, 교원 74.8%, 언론인 62.9%

-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 갑질 금지 등 공직자 행위기준 강화

□ 범국가적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체계 확립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17.9.~) 및 ‘5개년 반부패 종합 계획’ 추진(‘18.4.~)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협력 제도와

※ (반부패정책협의회) 총 5회 개최로 중대부패범죄 처벌 강화, 전관특혜 근절 등 논의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4대 전략·50대 과제의 이행성과 체감을 위한 종합관리 추진

□ 생활적폐 대책협의회 지속 운영을 통한 반칙과 특권 해소

-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장기간 고착화된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에 대한 제도·문화 및 행태의 종합개선 추진

※ 권익위를 중심으로 범정부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18.12월)하여 생애주기별 9개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및 협업 홍보 실시(총 5회)

□ 학사유치원 등 교육 분야 공정성 강화

- 1,320개 사립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EduFine) 적용(‘19.3.), 유치원 3법 국회 통과(‘20.1.) 등 유치원 운영 공정성 강화
- 학생평가 비위 사립교원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 적용(‘19.4, 「고등교육법」 개정) 등 학사행정의 부패소지 차단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조사대책 마련 및 민간 확산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및 종합대책 발표(‘19.2월)

※ 채용비리 519건 적발 → 771명 수사의뢰·징계요구 및 3,298명 채용기회 부여

- 채용절차법 개정·시행(‘19.7월, 고용부)으로 공정채용의 원칙을 민간 까지 확산하는 법적 기반 마련(30인 이상 사업·사업장)

※ △ 채용관련 청탁·압력·강요 및 금품수수 등 금지, △ 직무 수행상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요구 행위 금지 → 위반시 과태료(3천만원 / 500만원)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국가재정 누수 방지

- (공공재정환수법) 전체 공공기관(16,614개, '20년 기준) 소관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20.1.1. 시행)

* '19년 기준, 공공재정지급금 약 229조 추산

- (부정수급 점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점검 TF를 부처별로 구성하여 집중 점검, 1,854억원 적발, 647억원 환수 결정('19.상반기)

□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사무장병원 몰수 근거 마련('19.4.), 무자격자 처벌강화 등 「의료법」 개정('19.8.) 등 불법행위 대응 강화

□ 공공분야 갑질 근절 및 민간 확산

- 「공무원행동강령」 갑질금지 규정 신설('18.12.), 공공부문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배포('19.2.) 등 공직사회 공정성 제고
- 갑질근절 대책 민간 확산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직장 괴롭힘 금지 3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19.7.)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 사학비리·부패,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취약 분야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부패행위 예방·제거

- ✓ 부패신고 접수 : ('18년) 7,328건 → ('19년) 9,435건 (2,107건 증가)
※ 처리건수: ('18년) 7,224건, 306건 이첩 → ('19년) 8,718건, 415건 이첩
- ✓ 공익신고 접수 : ('18년) 3,923건 → ('19년) 5,164건 (1,241건 증가)
※ 처리건수: ('18년) 3,952건, 37건 이첩 → ('19년) 5,165건, 388건 이첩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 부패신고자 보호·지원을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19.10.17. 시행)
※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확대, 이행강제금·구조금 신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처벌 강화 등
- 비실명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문변호사단 구성(7.26.)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50인) 위촉, 자문변호사단 운영을 위한 훈령 마련

-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실시

- (보호) 역대 최다 보호사건(236건) 처리를 통해 신고자를 안정적으로 보호
※ 최근 5년간 인용률 : 44%('15)→46.7%('16)→52.4%('17)→61.3%('18)→58.7%('19)
- (보상) 보상위원회 최다 개최(11회)를 통해 평균 처리기간 대폭 단축



대통령 강조사항

-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0. 1. 7, 2020년 신년사 中)

□ 합법적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에 대한 대처 필요

- 교육, 취업, 납세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이 일부 마련되었으나, 합법적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반칙 관행은 여전히 존재
※ (예시) 입시·취업 분야에서의 이른바 ‘부모 찬스’ 악용 등
- 반부패 개혁을 넘어 합법적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을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필요

□ 정부의 노력을 알리기 위한 전략적 접근 요구

- 공공재정 누수, 채용비리, 생활적폐 등 이슈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는 아쉬운 수준
- 특히, 공공부문의 반부패 개혁 성과가 민간부문으로 이어져 정부 정책이 자연스럽게 홍보·공유될 수 있도록 확산 노력 요구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고제도 교육·홍보 필요

- 버닝썬 사건, 언론에 의한 신고자 신분노출 사건 등이 이슈가 되면서,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시행(‘18.10.18) 이후 다각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활용한 신고가 많지 않은 등 성과는 다소 미흡

※ ’19.10월 기준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자문번호사 2건), 전체 내부신고의 5% 수준



2020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 추진 과제

II. 2020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 추진 과제

비전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으로 더욱 공정한 사회 구현

목표

국민 공정의식·신뢰 제고, CPI 20위권 진입환경 조성

3대
전략

**반부패
추진기반 강화**

**부패예방
혁신 지원**

**체감하는
청렴문화 확산**

추진전략	주요정책과제
① 반부패 추진기반 강화	■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의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 강화
	■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운영
	■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 개선
	■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시행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
	■ 행동강령 내재화 및 이행점검 강화
	■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② 부패예방 혁신 지원	■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
	■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활성화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③ 체감하는 청렴문화 확산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반부패 업무 혁신
	■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의 구체적 성과 확산
	■ 부패·공익신고 사건처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로 사회 전반의 자정노력 촉진
	■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 공직자·국민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1

컨트롤타워로서의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 강화

- ◇ 범정부 정책협의체인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부패방지·공정성 향상 과제를 발굴·논의하고 추진동력 확보

〈 협의회 관련 대통령 강조사항 〉

-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 (국회시정연설, '19.10.22.)
-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하는 것은 (중략)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 (제5차 협의회, '19.11.8.)

□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확대·개편 운영

- (명칭) 반부패정책협의회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 (의제) 부패방지 대책 →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확대
 - ※ 교육, 채용, 납세, 기업 상생, 법 집행 등 사회 전반의 반부패·공정성 향상 과제 논의
- (참석대상) 협의회 참석대상을 민생·경제 관련 부처로 확대·다양화
 - ※ 민생·경제 부처(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는 필수참석 대상으로 추가(현행 12개 → 15개 부처)
- (운영기능 강화) 권익위는 간사기관으로서 시의성 있는 반부패·공정과제 발굴 및 개선대책 이행 과정에서 정책조정 역할 수행
- (규정 정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개정·시행 ('20.1.14.)

[협조 요청 사항]

- 협의회 참여기관의 반부패·공정성 향상 과제 적극 발굴 및 안건 상정
 - ※ 신규 참여기관(기재부, 교육부, 고용부)의 민생·경제 분야 불공정 개선과제 우선 발굴 요망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18.4.18.) 과제 소관기관은 단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 ※ 분기별 과제 추진실적 및 자료 제출 협조(반부패정책과제 시스템)

- ◇ 금품수수 관련 논란(가액범위)을 넘어 부정청탁 근절로 정책 방향 전환
- ◇ 공공·민간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지속

□ 국민과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확산

- (기본방향) 연고관계·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근절에 중점을 둔 교육·홍보 추진
- (일반국민) ‘청탁금지법’ 명칭, 법 주요내용의 정확한 인식을 위한 보도자료·기고·카드뉴스·웹툰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김영란법’, ‘3·5·10법’이 아닌 ‘청탁금지법’ 명칭 사용 필요성 강조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별 판례·유권해석 답변 등 실제 사례 위주 보도자료 연재(3월~) 등을 통해 국민들의 흥미 및 관심 유도
- (공공기관) 전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언론사 중심 인식 확산
 - 청탁방지담당관 역량 강화 워크숍(연 9회) 개최 및 워크숍 자료집, 해설집·매뉴얼·판례집 배포로 소속·산하·유관기관 등 확산 유도
 - 언론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과 협력을 통한 적법한 후원·협찬 관련 준수사항 전파
- (청탁 취약분야) 채용비리 취약업역, 공공기관 민간협력회사 등 대상 교육·홍보 강화
 - 채용 관련 취약업역 대상 인사·채용청탁 사례 전파 및 조치사항 컨설팅 추진(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협업)
 - 청탁금지 MOU를 매개로 공공기관 전직원·협력회사 포함 업무 단계별 유의사항 알림·빈발질의 해소

□ 실태조사, 기관 신고처리 현황 분석 등을 통한 법 집행력 확보

○ 언론보도, 신고사건, 유권해석 질의, 시민단체·학계 논의 사항 등을 분석하여 부정청탁 관행 실태조사·보완대책 마련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재화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청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취약분야 발굴·해소
- 기존 통보한 제도개선 대책* 이행현황 점검(11월) 및 현장방문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 '지자체 지역 축제 및 장학재단 협찬 관행 개선'('19.7월), '지자체의 특권성 주차편의 제공 관행 개선'('19.9월)

○ 신고 처리 현황 실태조사(반기별) 및 부적절 처리 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 부정청탁 제재 미비, 법인·단체 과태료 미부과(양벌규정 미적용) 등 부적절 처리 사례 발생 기관명 공개 및 현지점검 실시
- 법 위반신고·조치결과 외부 공개(홈페이지 등) 실시

※ 공개결과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불공정 청탁행위 차단을 위한 청탁금지법령 보완

○ (민간청탁 금지)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신설로 민간 기업에의 후원·협찬 강요 등 불공정 청탁행위 원천 차단

○ (대상직무 추가) 불공정 행위이나, 현행법 제5조 각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사례*를 대상 직무로 추가

* 인턴채용(제3호), 학위취득·장학금수여(제10호), 교도관 교정업무(제14호)

- 각 기관 신고처리 현황·언론보도 분석(사례 도출), 청렴컨설팅·청탁방지 담당관 워크숍 등(의견청취)을 통해 추가할 대상 직무 지속 발굴

[협조 요청 사항]

○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적극 참여(전 공공기관)

- 기관 전직원, 이해관계 있는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교육 수요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요청(연중)
- 각급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참석(연중 9회)
 - ※ 1회는 개최(1.9.)하였으며, 남은 8회는 세부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공문 시행 예정
- 국민권익위 교육·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소속·산하기관, 직무관련자 등에 전파(수시)
 - ※ 각종 자료는 제작 즉시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메인 화면 > 부패방지국 > 청렴자료실 > 청탁금지법)

○ 기관 신고처리 현황 등 실태조사 협조(전 공공기관)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처리, 교육·상담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시 자료 제출(1월, 7월) 및 현지 방문·점검 협조(4~6월, 10~12월)
 - ※ 제도 운영 관련 컨설팅을 원하는 기관은 별도 요청(수시)
- 부정청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관행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의견 청취 등 개선방안 마련 협조(수시)

○ 불공정 청탁행위 차단을 위한 법령 개선 협조(전 공공기관)

-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제안,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절차 진행 중인 법령에 대한 의견 개진(연중)

3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운영

◇ 국민 생활 속 주요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하여 우리사회의 공정성 강화

□ 범정부 협업을 통한 이행관리 및 대국민 소통 강화

-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 추진
 - 주기적 이행점검(매월) 및 관계부처 회의를 통한 개선성과 확산(매분기)
 - ※ 대책 협의회 : 의장(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및 과제 소관기관 국장급 참여

< 현행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개 과제 >

유아·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자위남용	✓권력유착
·유치원 비리 및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관행	·보조금 부정수급 ·보험수급 비리 ·지역 토착비리 ·안전분야 부패 ·재건축·재개발 비리 ·탈세관행

- 부처협업을 통한 전략적 홍보로 생활적폐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
 - 기관간 공동 홍보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 제고
 - ※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홍보자료 동시 게재, 전광판 등을 통한 영상송출 등

□ 기관별 자율 생활적폐 과제 발굴·개선

- 교육·탈세·직장·복지 등 생활 밀착 분야 신규과제 발굴·추진
 - ※ 민원정보분석, 국민생각함, 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 등 다양한 창구 활용
- 지자체의 자체 생활적폐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전국적 확산
 - ※ 계곡 내 불법시설물 철거, 페이퍼컴퍼니 공공입찰 단속, 지역형 체납관리단 등

[협조 요청 사항]

- 생활적폐 과제 소관기관별 개선대책 추진 및 대국민 홍보 강화(매월)
- 광역지자체의 경우 자체 생활적폐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참고	생활적폐 9대 과제 및 소관부처 현황('20. 2월현재)
-----------	--

연번	과 제 명	과제내용	소관부처
1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확보	▪ 대학입시 공정성, 학사관리, 학교 생활기록부 ▪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유아학습권 보장	교 육 부
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 정기적 전수조사 체계 구축·운영 ▪ 신고활성화, 제도적 예방 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
3	공공분야 갑질 근절	▪ 신고자 보호체계 구축, 처벌 및 제재 강화 ▪ 직장 괴롭힘 근절, 불공정거래 방지 등 민간분야 확산	국무조정실
4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	▪ 허위신청, 가격 부풀리기 등 주요 유형별 맞춤형 관리 ▪ 특별사법경찰 확대, 지자체간 교차 점검 등 단속실효성 향상 ▪ 지방 보조금 관리체계 점검 및 부정 환수법 제정 추진	기획재정부
5	지역 토착비리 개선	▪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수사전개 등 토착비리 엄정대응 ▪ 회계분석, 자금추적 역량강화 등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 무 부
6	탈세행위 근절	▪ 세금 없는 부의 이동 분석·검증, 세무조사 강화 ▪ 조세회피 사전신고제도 도입 등	국 세 청
7	불법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 근절	▪ 법인 임원지위 매매금지, 특수관계자 비율제한 ▪ 상시단속 및 자진신고 유도, 신고 포상금 인상 등	보건복지부
8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 업체선정 투명성 강화 및 조합 전횡 방지 제도개선 ▪ 비위업체 퇴출제 도입(3회 이상 비위 적발 시)	국토교통부
9	안전분야 부패근절	▪ 안전분야 반부패 감시시스템 구축 ▪ 주민 참여형 감시 확대, 국민의견 공모 등	행정안전부

4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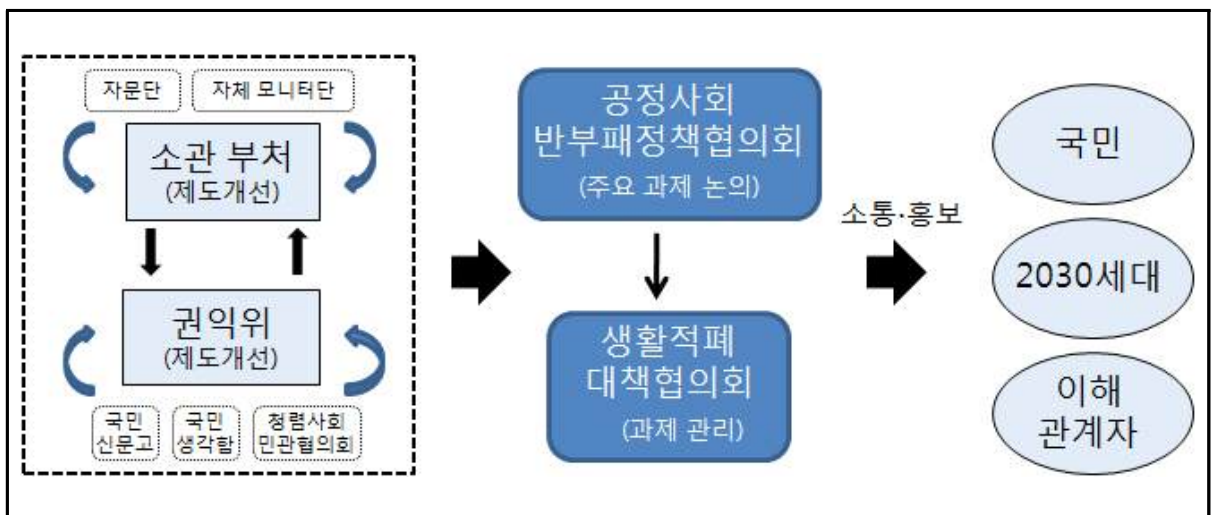
◇ 부패를 유발하는 일상 속 불공정과 특혜를 혁신, 국민의 반부패 성과 체감 극대화

□ 중점 혁신 분야

- (반칙 · 불공정) 특정 분야 종사자 · 집단에 과도한 특혜 관행
 - ※ 퇴직 공직자 대상 채용 우대, 공직자에 한정한 시설 우선권 부여 등
- (민관유착) 공공 · 민간유착으로 인한 의사결정 · 거래 왜곡 · 부패 유발
 - ※ 특정 업체들만 대상으로 한 관행적 수의 계약 등
- (갑질 · 재정누수) 우월적 지위 · 권한의 남용 및 공공재정의 낭비

□ 추진 체계

- (범정부적 협업과 관리) 권익위와 개별 부처 간 협업 추진 및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통한 과제 관리



- (권익위) 신규 과제 발굴, 반부패 과제 개선, 과제 성과관리 및 홍보
 - ※ 부패방지종합시스템, 국민신문고 및 국민생각함 분석으로 부처별 과제 선정 지원

《권익위 추진 과제》

연번	과제명	과제 요지
1	공공기관 위탁채용 운영체계 개선	공공기관 채용위탁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개선 및 퇴직자 가족 우대 등 채용기준의 합리성 강화
2	공공기관시설 사용 투명성 강화	정상적 거래관행을 일탈하여 부당사용을 유발하는 공공기관 시설관련 제도 개선
3	공직자등 대상 할인혜택 개선	특정 공직자 등에 부당한 할인혜택을 주는 규정과 협약 개선
4	임대주택 관리의 공정성 강화	청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임대주택 서비스의 적실성 확보 등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유도

- (소관 부처) 기관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자체 개선

※ 특히 기관에 부패사건 발생시 즉시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마련된 개선 대책을 우선적으로 관리

《부처별 과제(예시)》

연번	과제명	과제 요지
1	스포츠계 공정경쟁 시스템 정착 (문체부)	선수선발시 학연, 지연 등 불합리한 영향요인 배제, 승부조작 및 선수 권익침해 요인 혁파
2	부동산 거래질서 공정화 (국토부)	부동산 중개업자간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관행의 근절
3	공정한 금융 거래질서 확립 (금융위)	주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우월적 지위정보를 악용한 탈법 행위 근절
4	연구개발비 집행 투명성 강화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등)	연구개발비의 적정한 사용·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매 분기별 부처별 과제 성과를 분석하여, 주요 사안은 정책협의회에 논의 후 생활적폐 신규과제로 관리

※ 국정과제 및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주요 사안에 포함

[협조 요청 사항]

- 각급 부처에서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생활 속 불공정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권익위에 제출(~3.31.)
 - ※ 과제별 추진 실적 제출 (법령 개선, 제도 개선, 조사 분야로 구분)
- 우수 과제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협조(12월)
 - ※ 유공자 포상시 과제 추진 실적 및 성과 포함 요망

5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 ◇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채용질서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후속조치 및 개선대책 등 추진

□ 정기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대책 이행(‘20.상반기)

- 적발된 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퇴출, 피해자 구제 등 추진
 - (비리연루자) 수사 의뢰 및 징계 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즉시 업무 배제
 - (부정합격자) 검찰 기소 시 즉시 또는 일정절차를 거쳐 퇴출 절차 착수
 - (피해자) 피해자 구제 세부가이드라인(‘18.5월)에 따라 피해자 적극 구제
- 후속 제도개선 대책 발표시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 개정 등 대책을 신속히 이행

□ 제도 현장정착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 산하 공공기관의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서 후속조치 등 이행현황 점검 예정
- 채용비리 자체 적발 노력, 제도개선 사항 이행 등 기관별 채용비리 근절 노력도 등을 각종 평가에 반영

□ 공정채용 대책의 민간 확산

- (대상분야) 금융, 문화 예술, 체육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우선 추진
- (추진방법)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2.20) 등 해당 민간분야와 자율적 협력을 통한 공정채용대책 확산

[협조 요청 사항]

- 정기 전수조사 후속조치(비리 연루자 제재, 피해자 구제 등) 및 제도 개선 적극적 이행 및 점검 협조(전 공공기관)
- 해당 민간분야와 공정채용협약 등 공정채용대책 민간확산 적극 이행(전 공공기관)

- ◇ 특권·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공직사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위기준 정립
- ◇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행동강령 이행 노력을 유도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재발 방지

□ 「공무원 행동강령」 내실화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관련 행위기준 개선('20.5.27. 시행 예정)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도 가능하도록 변경
 - ※ 「청탁금지법」 제10조가 개정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 상담 및 질의 빈발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동강령 개정 추진(하반기)
 - 이권 개입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지방의회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제도 운영 지원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안 심사 강화로 제도의 통일성 확보(연중)
 -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안 심사 결과 개정 내용이 미흡·부실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행동강령 보완을 요구
- 행동강령 미제정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이행 기반 완비(상반기)
 - ※ '19.11월말 기준 243개 지방의회 중 17개 지방의회가 행동강령 조례 미제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자체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운영하는 헌법기관의 행동강령 현행화(이해충돌방지, 갑질 금지 등) 지원(연중)

-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컨설팅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협업·자율 중심의 개선 노력 유도(연중)

※ '18년 이후 지정된 103개 공직유관단체를 중점적으로 지원

□ 취약분야 테마별 행동강령 이행점검 실시

-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 방지규정('18.4월 시행) 운영 현황에 대해 이행점검(상반기)
 - ※ 사적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신규로 도입된 행위기준의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특권·특혜 소지가 높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 업무추진비, 수용비, 여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 집중 점검(하반기)
 - ※ 관용차량, 교육원·연수원 등의 부대시설, 기숙사, 체육시설, 기타 임대시설 등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개정 현황, 각종 신고의무 이행 여부, 상담 및 조사·처리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반기)
- (취약시기) 설·추석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위반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를 전후하여 집중적인 행동강령 이행점검 실시(연중)

[협조 요청 사항]

-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 사항 권익위에 제출(전 공공기관)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①행동강령 전문과 ②신·구조문대비표를 공문으로 송부

▶ 제정안인 경우에는 자료①만 송부
 - (2) 공직유관단체
 -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안 초안이 마련되면 ①제·개정안 초안, ②신·구조문대비표, ③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과의 비교표를 공문으로 송부

- ▶ 제정안인 경우에는 자료①만 송부
- ▶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참조
- ▶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과의 비교표는 참고자료(임직원 행동강령 - 행동강령 표준안 비교표 서식)를 참고하여 작성
- ▶ 권익위에서는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해당 기관으로 회신할 예정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신속한 반영 필요

-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①행동강령 전문과 ②신·구조문대비표를 공문으로 다시 한 번 송부

- ▶ 제정안인 경우에는 자료①만 송부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협조 (해당기관)
※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세부 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4월, 11월 예정)

- 각급 기관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이행실태 점검시 자료 제출 등 협조 (해당기관)

- 기관별 행동강령 준수 등 자율적 이행 노력 전개 (전 공공기관)

-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강령 자체 교육 강화
-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을 통한 행동강령 위반 예방활동 적극 전개
※ 필요시 점검실적 제출 요청 등을 통해 점검실적 확인 예정

- 행동강령 위반 신고 빈발분야 재발 방지 노력 강구 (전 공공기관)

- 특히, 출장여비 신청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조례·사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장여비 허위·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직자 교육 및 자체 점검 강화

(기 관 명) 임직원 행동강령 - 행동강령 표준안 비교표

행동강령 표준안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u>관련되는</u>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u>법인·단체</u> 를 말한다. 라. ○○○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u>법인·단체</u> <추가>	제2조(<u>용어의 정의</u>)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u>관련된</u>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u>단체</u> 를 말한다. 라. <u>공사와</u>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u>단체</u> (<u>하도급자를 포함한다</u>) 제9조(업체 임직원 면담 보고) 공사 임직원은 공사 소관 사규에 의해 조사 중인 개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사무실(출장지포함)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할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대상, 일시, 장소, 면담목적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상의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과 다르게 규정하였거나,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추가한 조문만 위 비교표에 작성하여 송부

7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

- ◇ 공공기관별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여 반부패 정책 수립·추진의 효과성 향상
- ◇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하여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고, 청렴 정책·문화 확산

□ 청렴도 측정의 신뢰성·타당성 제고

- (측정대상) 기관별 부패 현황 등을 고려, 대상기관 및 측정 업무 조정
 - (대상기관) 부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기관 대상 집중적 측정방안 검토(3월)
 - (대상업무) 기관별 업무 관련 부패취약 분야 검토 후 측정 대상 업무 조정(상반기)
- (측정모형) 전문가, 기관 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측정 내용, 가중치, 부패사건 감점 제외 범위 등 모형 개선 검토(상반기)
- (현지점검) 상·하반기(4~6월, 8~11월)에 나눠 시행 예정
 - (상반기) 제도·업무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및 자료제출 방법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에 대한 설명·안내 위주로 진행
 - (하반기) 표본 관리, 호의적 답변 유도, 명부 조작·누락 등 신뢰도 저해행위 집중 점검

□ 부패방지 시책평가 내실화 및 활용도 개선

- 평가지표 체계를 재설계하여, 공공기관의 부담 경감과 반부패 시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 도모
 - ※ 이행률이 높고 업무에 정착된 지표, 다른 지표의 이행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지표 등 우선 제외

○ 우수기관의 반부패 역량 확산 체계 구축

- (교육) 우수기관 담당자를 청렴교육 과정(감사청렴 담당자 과정)의 시책 평가 우수사례 분야 강사로 적극 활용
- (홍보)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해당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동영상 제작·홍보 추진
- (확산) 수범사례를 국가청렴정보시스템(청렴e시스템) 및 감사협회 등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공·민간 부문 확산

[협조 요청 사항]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3월) 및 실시계획(시책평가 3월 말, 청렴도 6월 말) 통보에 따른 자료와 의견 제출
 - '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안) 관련 기관 의견 제출(3월 중)
 - '20년 청렴도 측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3~5월), 조사대상 명부 등 자료 제출(7~8월)
- '19년 시책평가 우수기관(1·2등급)은 국가청렴정보시스템(청렴e시스템)에 우수시책 1건 이상 의무등록(~3.31.)
 - 우수 청렴정책 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동영상 제작 등 홍보 협조(상반기, 10개 내외 기관)
 - ※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 : 청렴마당 > 청렴활동('청렴활동분류' > '우수시책' 선택·등록)
 - ※ 제목 입력시 '(기관명) 우수시책명' 등록(예시 : (○○공사)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개선)
- '19년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평가 결과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3.31.)
- 현지점검 대상기관 선정 통보에 따른 점검 사항 협조
 - ※ 대상기관 선정 후 별도 공문 시행 예정(상·하반기)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5~6월) ※ 워크숍 계획 및 일정은 별도 공문 시행 예정(5~6월 중)

- ◇ 기회·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우리사회 혁신을 가로막는 국민 생활 속 불공정·특혜요인 발굴·개선
- ◇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개선효과 홍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정부 반부패 노력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 제도 속 내재된 불공정·특혜 개선

- 교육·채용 등에 있어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각종 기회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공정 관점에서 제도를 재설계
 - ※ (예) 불합리한 채용·지원자격 관련 불공정 개선, 비정규직 차별소지가 있는 제도 속 불공정 개선 등
- 정보 불충분, 갑질 계약, 관리 부실 등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태 및 사각지대 개선
 - ※ (예) 과업범위와 무관한 비용전가, 계약금액 조정불가, 이의신청절차 원천봉쇄 등 공공부문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등
-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있어 기존 법령·규정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국민 삶 속 불공정을 실질적으로 개선
 - ※ (예) 각종 계약·거래과정의 소비자 피해 방지방안 등

□ 권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이행 저조기관에 대한 맞춤형 이행관리 강화
 - 중앙·광역에 비해 이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초지자체, 국공립 대학, 중·소규모 공직유관단체 중심
 - ※ (대학) 54.5%, (기초) 65.0%, (공직유관) 81.0%, (광역) 80.8%, (중앙) 89.4%, (교육청) 95.8%

- 권고 이행을 일정수준 이하 기관,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별 컨설팅을 통해 제도개선 이행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 (의무) 이행률 일정수준(예 : 30%) 이하 기초지자체·국공립대학·공직유관단체 (신청) '18~'19년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등

-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감독기관과 협업점검 실시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가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통보 → 미흡기관은 합동전략회의 개최

○ 장기 미이행 과제의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마련

- 권고 후 장기간이 지났으나 이행되지 않는 미이행과제 전면 재검토

※ (점검대상) '08년~'12년 권고한 제도개선과제 451건(세부과제 2,300건)

(점검방법) 법령 개정 등 실제 이행실적 확인, 언론보도 및 관련 민원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종결 과제의 이행관리 필요성 검토

- 점검 결과 권고 취지가 현재도 유효하고 국민 입장에서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재권고 등 추진

-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도 기관별 이행수준 격차가 큰 과제는 기관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언론공표

- 임기만료 폐기 등으로 이행되지 않은 법률 개정사안은 21대 국회 구성을 계기로 국회제안을 추진, 조례 제·개정사안은 지방의회에 제안

□ 청렴·공정의 국민 삶 속 일상문화 정착을 위한 이행효과 확산

○ 제도개선으로 달라진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성과 관리·확산

- 국무회의 보고 및 카드뉴스·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한 제도개선 성과 홍보
- '이달의 개선사례'를 선정,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일선기관에서 즉시 적용·안내토록 유도

※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정책홍보 > 제도개선 > 주요 개선사례

[협조 요청 사항]

<제도개선 사후관리>

- 기관별 권고 이행현황 자체 점검 결과 제출(전 공공기관, 반기별)
 - ※ 기관별 자체 점검에 대한 세부 안내는 별도 공문 시행 예정(3, 9월)
- 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현황 조사·점검 시 협조
 - ※ 우수 협조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추천

<제도개선 이행효과 확산>

- 제도개선 이행효과 산출·계량화 제출(전 공공기관)
 - 예산절감효과, 보조금누수 방지효과, 정책수혜자 수 등
 - ※ 개정 제도개선 추진계획서 및 이행실적 서식 별도 공문 시행(2월 완료)

[별지 제1호 서식]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연 번	과제내용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기대효과	담당자
1-1		○ ○		※ 수정수용, 수 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 으로 기재	※ 정책수혜자 (명, 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 른 수치화된 (예 상)성과	○ 부서명 (담당자, 전 화, 이메일)
1-2		○ ○				
2-1		○ ○ ○				

[별지 제2호 서식]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최종작성일	0000. 00. 00.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기관명·부서명		
조치시한	0000. 00. 00.	담당자		
		연락처·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정책수혜자(명, 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 치화된 성과

-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19.10.17)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직유관 단체 사규의 일제정비 필요
-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사규 개정을 통해 민관 접점 분야의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공공기관 사규 일제 점검

- 공공기관을 업무 유형별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소관 규정 일제 정비
 - 491개 공직유관단체를 공공기관 정원, 자산규모, 자체수입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3년(상·하반기)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사규 등 평가
 - ※ 2020년도 점검 대상 기관 187개 : 36개 공기업 및 151개 지방공사·공단
- 기관별 자체점검 추진 및 점검결과 분석을 통해 분야별 중점개선 사항은 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개선권고
 - 점검대상 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2월)
 - ※ 사규, 부패영향평가 계획·실적 및 결과, 자체·외부 감사결과 등
 - 감독기관 및 점검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개선 설명회 개최(3~4월)
 -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자료 배포로 대체
 - 제출자료 분석 및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전문가 간담회 개최(5월~)
 - ※ 개선안 발굴 정도에 따라 필요시 수시 실시
 - 분야별 공기업 등 사규 개선안 마련(5~11월)
 - 하반기 및 연간 성과 보고(12월)
 - ※ 시책평가 반영, 위원장 포상 등

< 월별 세부 추진 내용 >

주요업무내용	일정	세 부 내 용
계획수립 자료제출 요청 점검팀 구성	2월	- 계획 수립 및 언론보도 - 감독기관 및 점검대상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 요청 - 감독기관 방문을 통한 공공기관 문제점 파악 - 공공기관 파견 등 인력확보 협의 개시 ※ 인사혁신처,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협의
설명회 개최 제출자료분석 인력확보	3월	- 감독기관 및 점검대상 기관 사규개선 설명회 개최(1팀) ※ 일정 및 취지 공유, 개선사항 발굴 협조 요청 및 언론보도 - 제출 자료 분석(합동) - 공공기관 파견자 배치 및 점검팀 운영(1팀)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3·4월	- 분야별 심층 분석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합동) -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1팀) ※ 필요시 수시 실시 및 관련 내용 언론보도
에너지분야 개선안 상정	4·5월	- 에너지분야 18개 공직유관단체 개선안 상정(합동) ※ 주요사례 언론보도
사회간접자본분야 개선안 상정 상반기 성과 보고	6월	- 사회간접자본분야 17개 공직유관단체 개선안 상정(1팀) ※ 상반기 주요사례 언론보도 - 상반기 성과보고
건설·주택분야 개선안 상정	7월	- 건설·주택분야 7개 공직유관단체 개선안 상정(2팀) ※ 주요사례 언론보도
도시개발분야 개선안 상정(2)	8월	- 도시개발분야 20개 공직유관단체 개선안 상정(2팀) ※ 주요사례 언론보도
시설관리분야 개선안 상정(1)	9월	- 시설관리·환경분야 103개 공직유관단체 개선안 상정(1팀) ※ 주요사례 언론보도 - 공공기관 파견자 복귀
문화레저분야 개선안 상정(2)	10월	- 문화·레저 등 13개 공직유관단체 개선안 상정(1팀) ※ 주요사례 언론보도
기타분야 개선안 상정	11월	- 농수산물 등 기타분야 9개 공직유관단체 개선안 상정 (2팀) ※ 주요사례 언론보도
성과보고	12월	- 하반기 및 연간 성과 보고(1팀) ※ 부패방지시책평가 반영, 위원장 포상, 언론보도 배포 등

□ **취약·필요 분야 부패영향평가 강화**

- 현행 법령 중 재정누수 취약분야, 신고자 보호 필요분야 대상법률 발굴·개선
 - (재정누수) 개별 지급금 근거법령 중 공공재정환수법의 환수·제재 규정보다 강도가 약한 법령을 발굴·개선
 - ※ 환수규정이 있거나(138개) 제제부가금 유사규정이 있는(21개) 법률에 대해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부과·제재를 하도록 개선
 - (신고자 보호) 규제, 인·허가 등 분야별로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법령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영 추진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점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대상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권고사항의 적극적 이행 도모
 - ※ '14~'19년도 제·개정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상·하반기 각 1회), 필요 시 이행률 저조기관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점검 예정

□ **부패영향평가 컨설팅으로 공공기관 자체 부패영향평가 역량 강화**

-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실시
 - 제·개정 사규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절차에 대한 설명 및 평가 사례 등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집합 컨설팅 실시(년 1회)

[협조 요청 사항]

-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제출 등 협조(해당 공공기관)
 - ※ 부패방지시책평가 가점 사항
- 개선권고 이행점검 협조(해당 공공기관)
 - '13년~'18년 제·개정 법령 및 현행 법령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 시 자료 제출(이행여부, 미이행 사유, 향후 계획 등)
- 자치법규·내부규정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권익위로 부패영향평가 의뢰
 - ※ 부패방지시책평가 가점 사항
-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실시 시 신청 및 참여

- ◇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청렴강사 양성 및 콘텐츠 보급 등을 통한 각급기관의 내실있는 청렴교육 실시 지원
- ◇ 국민참여형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및 대국민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의식을 확산하는 계기 마련

가. 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른 청렴 교육과정 운영

- (대면교육 대상자) 신규자, 승진자,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 세부 커리큘럼 및 교육일정 등은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안내 예정(3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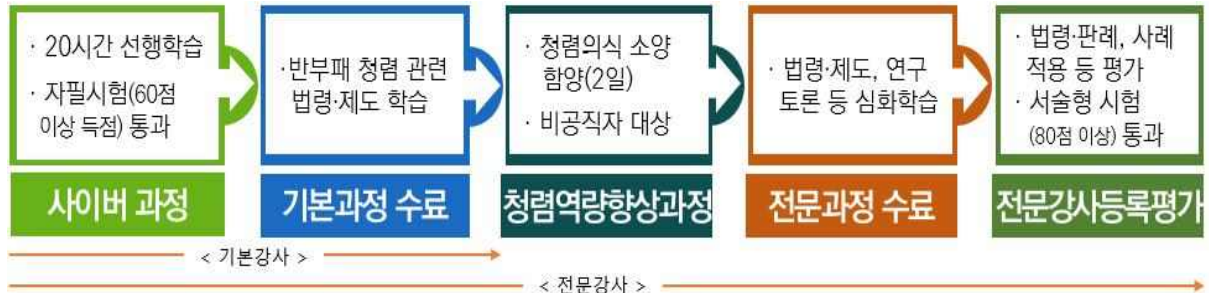
< 청렴연수원 주요 집합교육 과정(안) >

세부분야	교육과정
기관대상 청렴교육	▶ 청렴Live(청렴콘서트) ▶ 지방의회의원 청렴연수과정
청렴교육 의무화 맞춤교육 (6개 과정)	▶ 고위직 과정 ▶ 신규자 과정 ▶ 승진자 과정 ▶ 부패대응능력 향상과정 ▶ 밀레니얼 청렴리더십 과정 ▶ 청렴 엑스퍼트 과정(감사·청렴업무 담당자)
강사양성 및 교사대상 교육 (4개 과정)	▶ 강사양성 기본과정 ▶ 강사양성 전문과정 ▶ 청렴교육강사 보수교육(대면 또는 사이버 교육) ▶ 현직 교사 직무연수
기타	▶ 청렴역량 향상과정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권익구제 역량증진 과정(고충민원담당자)

- (청렴교육 강사 양성) 전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기관의 실정을 반영한 실효적 교육 추진 지원

- 자체 청렴교육 시 기본강사·전문강사 등 적극 활용

< 청렴교육 양성 단계 >



- (청렴 엑스퍼트 과정) 감사·청렴업무 담당자가 기관 내 각종 반부패·청렴 관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 제공(5일)

< 교육 과정 구성(안) >

청렴역량 · 개인별 청렴역량 진단 · 청렴4구성요소 이해 · 딜레마상황 토론	반부패 정책 · 청렴평가제도 이해 · 혁신적 청렴정책 수립 · 최신 정책 트렌드 · 우수기관 실천사례	법·제도 · 청탁금지법 토크쇼 · 공공재정환수법 이해 · 공익신고자와의 대화 ·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	교양 · 청렴콘서트 · 청렴골든벨 · 청백리를 찾아서(trip) · 영화속 청렴스토리
---	--	--	---

- (지방의원 특별과정)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연찬회와 연계한 청렴교육 제공 가능

- ‘찾아가는 청렴 Live(청렴콘서트)’ 대상기관 선정 시 지방의원이 참석하는 경우 우선 선정(지자체 대상)

< 지방의원 교육 프로그램(안) >

- 기관방문형 과정 : 청렴Live(2h), 청렴서약식(1h) 등
- 1일 과정 : 청렴디딤 과정(1~2h), 청렴역량 과정(3~4h), 청렴배움 과정(4~6h)
- 2일 과정 : 청렴리더십 과정, 청렴휴(休) 과정, 청렴역사탐방 과정

※ 올해부터는 ‘청렴교육 의무화 이행점검’ 시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구분하여 이수율 결과 취합

- **(사이버교육)** ‘청렴 판단력 키우기’ 등 신규·보완 교육 콘텐츠 탑재, 연간 총 11회 운영(2~12월, 나라배움터 청렴연수원)
- **(교육콘텐츠 활용)** 각급기관 청렴교육 실시 지원을 위한 신규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완료(‘19년 말)
 -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등에 탑재 완료, 각급기관의 다양한 교육(공직자, 대국민)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

< 주요 청렴교육 콘텐츠 >

구분	세부내용·주제
온라인 공개강좌 영상물 (약 10분)	- 인문학 속 청렴(3차시) - 생활 속 청렴정보통(3차시) * K-MOOC, G-SEEK 등에서도 누구나 수강 가능
마이크로러닝 영상물 ‘청사진(淸寫眞)’ (약 4~5분)	-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양심의 중요성 - 공익신고 사례를 통한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 부패로 인한 참사, 그리고 청렴의 필요성 - 직장인의 일상을 통해 본 청렴의식의 중요성
청렴특집 세바시 영상물	-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김지윤 방송인·박사) - 제자들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았습니다(공익신고자) - 아이들에게 떳떳한 어른이 되는 법(110콜센터 상담원)
표준강의안 PPT	- 사례를 통해본 부패·공익신고 -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등
청렴퀴즈 문제풀	- 「청렴 골든벨」 진행 매뉴얼 및 문제풀
청렴 보드게임	- 초·중등 교실용 빅게임 「신념의 보석」 교구

□ 청렴교육 추진실적 점검

- 청렴교육 의무화(부패방지 권익위법 제81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교육운영 실태 점검 실시
 - 2019년도 기관별 청렴교육 추진 실적 취합
 - ※ 미제출기관 및 실적보완 필요기관 실적 제출 필요
 - 기관별 실적에 대한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협조 요청 사항]

- 기관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교육강사를 활용(全 공공기관)
 - 청렴교육 전문강사·소양강사(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평가를 합격한 소속직원 활용
 - ※ 청렴교육 전문강사·소양강사 활용 시,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설문양식 홈페이지 참조)를 실시
 - ※ 실적·만족도 미입력 시 차년도 청렴교육강사 활용 일부 제한 조치예정
-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공지 및 참여 독려(全 공공기관)
 - 교육 일정, 신청 절차 등 내부 인트라넷 등에 공지·확산
 - ※ 청렴연수원 대면·사이버교육 운영계획은 별도 공지 예정(2월)
 - 특히, 청렴 업무 담당자는 ‘청렴 엑스퍼트 과정’ 입교 독려(신규보직자 필수)
- 각급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기본교육과정(신규자·승진자 등)에 청렴교육 교과목 필수 배정(全 공공기관)
 - ※ '20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인사혁신처) 참고
- '19년도 교육운영 실적 청렴e시스템 입력(제출) 협조(全 공공기관)
 - ※ 미제출기관 및 실적보완 필요기관 실적 제출 요망(즉시)

나.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홍보 및 참여 활성화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 국민·공직자가 청렴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각 분야별 입선 이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 수여

< 청렴 콘텐츠 공모전 >

- *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식의 청렴 콘텐츠 공모
 - (사연)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양심 관련 이야기 등을 담은 수필
 - (영상물) 국민이 생각하는 청렴 등을 소재로 제작한 영상(5~10분)
 - (웹툰)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 또는 청렴 사연을 소재로 그린 만화
 - (랩·RAP) 2분 이내의 짧은 랩(RAP)을 작사·작곡하여 동영상으로 제작
- ★ 세부 일정 및 분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 공문 참조

- 다양한 반부패·청렴사례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 대상 포스터 배포, SNS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협조 요청 사항]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적극적 홍보 및 참여(全 공공기관)
 - 각급 공공기관 인터넷 및 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에 공모전 안내 배너 설치, 청사 내 게시판 등에 포스터 부착 등
 - 양질의 사례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해 소속직원·국민 참여 유도
 - ※ 세부 계획 및 홍보 협조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 입선 이상의 우수성과자에 대해 상장·상금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다. 2020 반부패 주간 운영

□ 청렴·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주간’ 운영

○ UN 지정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전후로 약 1주일간 ‘반부패 주간’ 운영, 각급 기관과 공동홍보 추진

- (시민 대상)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청렴체험 프로그램, 인형극, 청렴 문화캠프 등 시민,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기획

- (공직자 대상)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반부패 우수시책 공유, 청렴 특강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20년 반부패 주간(예정) : 12.7(월)~12.11(금), 5일간

- (참여·체감 행사) 청렴골든벨, 청렴문화캠프, 신고자 보호 등 위원회 주요 제도 홍보부스 설치, 특별이동신문고 운영 등

[협조 요청 사항]

○ 2020 반부패 주간에 기관 자체 청렴문화행사 추진 (全 공공기관)

-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클러스터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행사 추진 등

○ 2020 반부패 주간 동안 1년간 각급기관에서 추진한 반부패 추진성과 등 집중 홍보 (全 공공기관)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국민관심 부패 이슈에 적극 대응, 청렴사회협약 체결 등 청렴실천 문화의 확산

□ 청렴·공정 사회를 위한 혁신 주도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한 공정 관련 정책의제 발굴·제안

- ‘공정’, ‘정의’ 등 청년세대 요구, 국민관심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해법을 제시하여 정부·정책 불신 해소에 기여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논의 의제(예시) >

- | | |
|----------------------------|---------------------|
| ▲ 갑질 근절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보완 | |
| ▲ 대학입시제도 투명성 제고 | ▲ 국회·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
| ▲ 기업 내부감사시스템 실효성 제고 | ▲ 공공 위원회 구성 공정성 강화 |
| ▲ 지자체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강화 | ▲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실효성 강화 |

- 민관협의회 결정사항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상정·논의, 민관협의회 위원의 언론기고, 결정레집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확산

○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청렴문화 확산 거점으로 육성

- 중앙-지역 협의회 간 교류활동, 실무자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협의회 역할·운영방향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
- 청렴시책 개발·시행, 청렴실천운동 전개, 시민참여 확대 등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협력

※ (예시) 퍼포먼스 위주의 청렴문화제 개막식 → ‘청렴시책 성과보고회’ 중심으로 개선

- 영상 등 기관보유 콘텐츠를 정책방송, 기관·단체 미디어, 주민 센터,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에 송출하는 청렴캠페인 추진

※ 17개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456개 기관·단체 및 중앙부처 참여

□ 청렴문화의 전방위적 확산

- 지역별·분야별 청렴사회협약 확산 및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
 - 기업·경제분야, 금융분야 등 국민요구가 큰 분야로 청렴사회협약 확산
 - 청렴사회협약을 이미 체결*한 지역·분야는 구체적인 실천과제와 이행방안을 도출하고 세부과제를 적극 실천
 - * '19년말 기준, 17개 시·도 및 5개 분야(국방, 방위산업, 공기업, 중소기업, 회계) 청렴사회협약 체결
 - 협약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 이행점검 및 평가 실시
 - ※ 협약 당사자들이 세부 실천과제의 이행 및 효과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평가(전문가 평가 및 국민체감도 조사) 실시
 - 권익위는 청렴사회협약 이행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 '1기관 1청렴실천 운동' 등 공공기관의 청렴행정·청렴경영 선도
 -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에 그쳐서는 안 되고 기관 본연의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투명성 향상 노력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 사례 :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경기도), 고객기업 갑질근절 노력을 신용평가·금리에 반영(수출입은행), TV 청렴캠페인 영상 제작·방영(EBS)
 - 공공기관의 협력사 상생워크숍 시 청렴경영 교육 실시
 - ※ 권익위가 강사 및 커리큘럼 지원
-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청렴성 강화
 - 청렴연수원 및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기관별(지자체·중앙행정·공직유관단체) 특성 및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제도 이해, 제도개선 방법 등
 - 워크숍 개최를 통해 운영지침 전달, 활동방향의 적정성 점검

[협조 요청 사항]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책제안 해당기관 적극 검토(해당기관)
 - ※ 참고(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과제별 소관기관 현황) 참조
- 다양한 부문·분야가 참여하는 지역별·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체결, 구체적인 실천과제 선정 및 자율적 이행 평가 실시(해당기관)
 - ※ 19년말 기준, 17개 시·도 및 5개 분야(국방, 방위산업, 공기업, 중소기업, 회계) 청렴사회협약 체결
- 각급 기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1기관 1청렴실천 운동'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적극 전개(전 공공기관)
 - ※ 우수사례 :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경기도), 고객기업 갑질근절 노력을 신용평가·금리에 반영(수출입은행), 청렴캠페인 영상 제작·방영(EBS)
- 공공기관 협력사 상생워크숍 시 청렴경영 교육실시 협조
 - ※ 권익위가 강사 및 커리큘럼 지원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내실화 노력(전 공공기관)
 - 기관유형별 워크숍 개최 시 참여(4·7·10월 예정)
 - 시민감사관의 감사·제도개선 권고 적극 반영

참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과제별 소관기관 현황

연번	제안 과제명	제안 내용	소관기관
1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18.11.2.)	공익법인(자산100억원 이상), 사립대학,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 제3의 기관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감사인 지정제' 시행 ○ 감사결과에 재무제표 외에 비영리법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확인사항 기재 ○ 회계감사 결과 공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 개선('18.11.2.)	○ 특수활동비 적용범위 명확하게 한정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삭제) ○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편성규모 감축 ○ 객관적인 편성 심사기준 마련 및 외부 전문가의 심사 참여 ○ 정기적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중단 및 실제 특수활동 수행자에게만 지급 ○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 국회제출 및 주요내용 대국민 공개 ○ 부당사용 정기조사 실시 및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규정 삭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해당부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해당부처 기획재정부 해당부처 감사원
3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18.11.2.)	○ '전관예우' 용어 대신 '전관특혜' 또는 '전관비리' 사용 ○ 고위 법조공직자는 퇴직후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 금지 ○ 공직퇴임 변호사의 퇴임 전 소속기관 처리사건 수임제한기간 연장 및 위반시 제재규정 신설 ○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 공개·심사 강화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무부
4	청렴사회협약의 추진('19.4.2.)	○ 각급 기관·단체의 지역별·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방안 모색 ○ 청렴사회협약 실무지침서 개발·보급 및 컨설팅 실시	전 공공기관 국민권익위

연번	제안 과제명	제안 내용	소관기관
5	지방의회의원 정보 투명성 (’19.7.11.) 검직 강화	○ 모든 지방의원의 검직여부 신고 및 검직정보 지역주민에게 공개(지방자치법 개정)	행정안전부
		○ 검직현황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한 징계의무규정 도입(지방자치법 개정) 및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조례 등)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 지방의원 임개개시 시 청렴의무준수 선서	지방의회
		○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의원 청렴·윤리 자문·감시기구 운영	지방의회
6	공익신고자 보호 강 화를 통한 신고 활 성화(’19.10.14.)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기준 마련 및 공익신고 인정범위 확대	국민권익위
		○ 구조금 지급항목 확대 및 지급금액 현실화	
		○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기관 확대 및 공익신고자 보호 지침 개발·보급	
		○ 공익신고 접수 대행업체 운영실태 파악 및 대행업체 관리시스템 구축	
		○ 공공계약 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체계 구축된 업체 가점 부여	
7	아파트 선분양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19.12.12.)	○ 준공도면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도면으로 하자 판정 및 감리결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국토교통부
		○ 내·외장재 변경은 동급 또는 고품질 자재로 변경시에만 제한적 허용 및 변경사실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 마감재 목록표 상 필수포함항목 규정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및 내실있는 사용검사	지자체
8	초·중등 사무직원 공정성 (’19.12.12.) 사립학교 신규채용 강화	○ (가칭)‘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도입	교육청
		○ 사립학교법 상 사무직원 공개경쟁채용 원칙 명시, 공개경쟁채용 외 채용직원 인건비 보조 제한	교육부, 교육청
		○ 이사 또는 학교장 친인척 채용시 현황 공시, 미공시·허위공시 제재규정 마련	교육청

- ◇ 엄정한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및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보상으로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

□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환수 체계 운영

- '나랏돈의 공정 사용' 기준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
 -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모든 부정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 공공재정의 누수로 인한 재정 건전성 훼손 방지
 -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한 부정청구 관행 근절 유도

<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

✓ (대상) : 전체 공공기관(16,614개) 소관 법률(913개)·자치법규(6만5천여개)에 근거한 공공재정지급금

✓ (주요내용)

- ①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부정청구에 대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
- ②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③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 ④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 적극적 홍보로 제도의 안착 및 공공재정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
 - (수급자) 공공재정의 오청구·오지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의 예방을 위해 제도 시행, 제재 내용 및 주요 사례 집중 홍보
 - (일반국민) 공공재정환수제도에 따른 재정 건전성 제고, 예산의 적재적소 활용 등 긍정적 기대효과를 중점 홍보해 인식 개선 유도
 - ※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니라 “눈뜬 돈”이라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 추진
 - (공직자) 일선 현장에서 부정청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내용, 적용 사례 등에 대한 간담회·교육 등 실시

□ 실태점검을 통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취약분야 분석·개선

- (체계적 정보관리) 최초 신고처리부터 부정청구 발생의 근거법률, 사업명, 소관기관, 부정청구 발생내역, 환수·제재 내역을 수집·관리
 - 축적된 정보분석을 통하여 부정청구 취약분야를 선정,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실시
- ※ 분야별 부정청구 규모 및 환수·제재실태, 제도운영의 적정성 여부, 기타 제도개선 및 법령보완 필요사항 등 도출
- (기획실태조사) 신고사건 빈발분야,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의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기획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적발 강화
 - ※ '20년에는 연구개발 분야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예정
- (관계기관 업무 지원) 부정수급 신고 통계자료, 사례 분석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지원

[협조 요청 사항]

- 일반국민, 수급자 등 대상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내용 및 사례 등 적극 홍보 (전 공공기관)
 - * 신청서, 사업 홍보물, 안내 자료 등에 공공재정환수제도 해당 사업임을 알려, 국민들이 제도 시행을 몰라 법을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 방지
-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과정에서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격 검증, 사후점검 등 관리 강화 (전 공공기관)
- 부정청구 등 발생시 공공재정환수법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법적의무사항 이행 (전 공공기관)
- 법 이행점검 체계 마련을 위한 '기관별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사업 현황 조사'(상반기) 및 '이행실태 점검'(하반기)시 적극 협조 (전 공공기관)

참고 1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지급금(법 제2조)
 - ⇒ 공공재정지급금을 유형화하여 예시하고 고시하도록 함(영 제2조)
 - 보조금 등 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위해 제공
 - 국가 및 지자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실의 보상
 - 연구개발 사업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
 -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금품등
 -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한 금품등
 - 사회복지 차원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개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부정이의 환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의와 이자를 환수(법 제8조)
 - ⇒ 이자는 부정이의 가액에 국세환급가산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영 제3조)
- **[제재부가금 부과]**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법 제9조)
 - ⇒ 부정청구 행위유형에 따라 허위청구 500%, 과다청구 300%, 목적외 사용 200%의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영 제5조, 별표1)
-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법 제16조)
 - ⇒ 행정청은 매년 3월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시(영 제10조)
- **[신고자 보상]** 부정이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 회복 등에 기여시 보상금 지급(법 제18조, 제23조)
 - ⇒ 보상금은 30억 한도에서 보상대상가액의 30%로 정하며, 감액 사유 및 감액 한도 등 기준 마련(영 제18조, 제18조)

참고 2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 공공재정지급금 사례

○ 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기타보전금(310-04)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 ▶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교육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사업출연금(350-02)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 ▶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지원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민간경상보조(320-01)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 ▶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 ▶ **전통시장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 시·도 교육청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 ▶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는 「유아교육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사립유치원학비지원(620-15)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 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 ▶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사회복지 차원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개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

- ◇ 권익위와 조사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신고사건 처리를 내실화 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을 강화

□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익·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정을 저해하거나 불법적 반칙·특권행위를 집중 단속

분야(예시)	신고대상	시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20.3월~5월
불공정 거래 등	입찰 담합, 리베이트, 불법하도급, 자격증 불법 대여 등	'20.7월~8월

* 현안이나 이슈가 되는 사안 발생시 집중신고기간을 추가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집중신고기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홍보를 추진하고, 웹툰·카드뉴스 등 홍보콘텐츠 제작

- (제도 홍보) 주요 신고사건 처리결과,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내용 및 보호사례 홍보를 통해 신고 활성화 추진

※ 공공기관 홈페이지(배너광고)·온라인(페이스북·블로그 등 SNS) 광고, KTX, 버스, 전광판 등 옥외광고, 소식지·간행물 등

□ 이첩·송부 신고사건에 대한 사후관리 효율화

- (법적근거 강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의 '관계기관 송부'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

- (시스템 개선) 이첩·송부사건에 대해 조사·수사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청렴정보시스템상 기능 마련

※ 이첩·송부 사건도 조사·수사기관 자체 접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관리 가능

○ **(점검 강화) 이첩·송부사건 조사 진행 현황 및 처리결과의 상세한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및 현장조사 강화**

※ '19년 이첩사건 실태조사 결과 처리가 지연되거나 미회신사건이 많은 기관 대상 정책간담회 등 실시, 임의적 재이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 **장기 미통보된 이첩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 협조 요청(반기별)**

- **‘관계기관 송부’ 사건도 조사완료 후 처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 부패신고의 경우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패신고 송부사건 처리결과의 위원회 통보 의무화('19.10.17. 시행)

- **신속한 부패수익 환수,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한 이첩사건의 수사·재판결과 및 환수 부패수익 정보 파악 및 공유 강화**

※ 법 개정에 따라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할 필요('20.6.11. 시행예정)

< 신고사건 사후관리 관련 법령 최근 개정사항 >

- ✓ 부패신고 ‘관계기관 송부’사건 처리결과의 위원회 통보 의무화(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 '19.10.17. 시행)
-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20.6.11. 시행예정)

[협조 요청 사항]

- 각급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 홍보 (전 공공기관)
- 부패·공익 등 신고사건 조사처리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해당기관)
- 조사기관에 신고사건 이첩·송부 시, 신속한 조사처리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 협조 요청(해당기관)
 - ※ 담당자 교체 시 이첩·송부 사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반기별 점검 공문시행 시 자료 협조
- 이첩·송부사건에 대한 소청·소송 등에 따른 실질적·최종적인 조사결과 제출 협조(해당기관)

- ◇ 신고자 보호·보상 범위 확대 및 지원확대를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실질적 지원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현행 법률(1,470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468개로 확대

※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82개 법률 신규 추가(‘20.4.29. 국회 본회의 의결)

- (책임감면 확대) 권익위 요구가 없더라도 각 기관이 신고자에 대한 징계·행정처분을 자체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추진

□ 신고자 보상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

- (보상 합리화)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을 보상대상가액의 정률(30%)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추진

- 공익신고 보·포상 지급사유에 ‘공공기관’(현행: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 또는 재산상 이익도 추가 (* 법률 개정 추진 예정)

※ 현재 공익신고는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보상)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포상)만 보상·포상 대상에 해당

- (재취업 지원) 유관기관(예시: 고용노동부) 협의를 통해 부패·공익신고자의 재취업 지원 방안 모색

□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활성화 (공익신고)

- (교육·홍보) 대국민·공공기관 등 대상 제도 교육·홍보 강화
 -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권익위 자문변호사단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홍보·교육 실시
 - ※ 책자·리플릿·포스터·보도자료 등 제작·배포, 온라인 매체(SNS, 블로그, 카드뉴스 등)나 전광판 이용, 정부부처 주관 각종 행사 및 박람회 등 활용
- (협업) 자문변호사단, 대한변협, 지방변협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제도교육, 의견수렴
- (제도개선) 비실명 대리신고 기관(현재는 권익위) 확대,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범위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
 - ※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발전방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 마련(상반기)

[협조 요청 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시 신규 대상법률 소관 부처는 각급 기관에 관련 내용 전파(중앙부처)
-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제명변경, 분법, 통합, 폐지 등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개정 시 타법개정 협조(중앙부처)

<예시> 부칙

제1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개정 사항 기관별 내부지침에 반영(전 공공기관)
 - ※ 위원회 외 다른 기관에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른 포상금 지급 추천 규정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사항(19.10.17. 시행) 반영, 신고 처리기간 규정 신설 등(20.1월 배포, 위원회 홈페이지 청렴자료실 게시)

- 각급기관에서 부패·공익신고 보·포상금(구조금 포함) 지급 시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원인에 의해 지급한 보·포상금 지급 액수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에 반영(전 공공기관)
 - ※ 관련 근거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1조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 각급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및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홍보(전 공공기관)
 - * 온라인 매체(SNS, 블로그, 카드뉴스 등), 전광판, 각종 행사 및 박람회 등
 - ※ 각종 행사 및 박람회 등 개최 시 위원회와의 사전 정보 공유 협조
- '19년 신고자 보호교육 미실시 기관 대상 위원회 교육 참여 및 자체 교육 실시(전 공공기관)
- 공익신고제도 운영현황 조사 시 자료제출 협조(해당기관, ~3.6.)
- 신고자 보호기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참여 협조(전 공공기관, 4월 예정)
 - ※ 토론회 개최 계획 등 별도 참석요청 공문 발송 예정
- 신고자 재취업 지원방안 마련 협조(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지자체 등)

-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적극 운영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보호제도의 적극운동을 통한 불이익 예방·관리

- (보호 강화) 조사중 해결, 우선적 인사조치, 화해 등 활용 가능한 법적 보호수단을 동원하여 신고자의 불이익을 전방위적으로 해소
 - 신고자를 불이익조치하거나 신분을 공개한 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 조치
 - ※ 보호조치결정을 기한 내 불이행한 자는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
- (사후관리) 보호조치 결정 이후 보호조치 이행, 추가 피해·불이익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사후 점검·관리 강화
 - ※ 점검 결과 추가 불이익조치 발견 시 즉시 보호사건으로 접수·처리

□ 보상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신고자 만족도 제고

- (보상금 적기 지급) 법정처리기한(90일) 내 처리 및 적절한 보상금 지급
 -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금 법정수납기한(3개월) 내 징수
 - ※ 상환 요청대상 : (부패보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익보상) 지자체
 -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19.10.17. 시행)으로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제도 시행
- (포상금 지급 확대) 신고(부패·공익·청탁·부정청구 신고 등)로 인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 적극 지급
 -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19.10.17. 시행)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정('20.1.1.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에 부패·부정청구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가능
 - ※ 다만, 공익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이 내부 신고자로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외부 신고자 중 현저히 공익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 적극 지급

[협조 요청 사항]

- 신속한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호사건 관련 위원회 요구(신분공개 경위 조사자료 제출 요구, 책임감면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해당기관)
- 신고자 보상사건 관련 위원회 요구자료(신고 사건 조사결과, 행정처분 사실관계 등) 제출 협조 요청(해당기관)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신고자에게 안내(전 공공기관)
-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금의 적기 납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 부패·청탁 및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전 공공기관)

- ◇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취업제한제도 위반자 발생 사전 차단
- ◇ 취업실태 점검 강화를 통한 불법 재취업자 적발 및 제제조치 적극 실시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체계 재정비

- 비위면직자 등 취업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전심사제 도입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여부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위해 ‘비위면직자등 취업심사위원회’ 설치
 - ※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19.6.3, 금태섭 의원 발의) 정무위 계류중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 (점검강화) 연금제한자 전수조회(최근 5년분), 범죄경력조회 등 자료 취합·분석을 통해 점검대상자 확인 강화(5~6월)
- (실효성 확보) 비위면직자 등 현황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 법적 이행 방안(법 제82조의2·제91조) 활용 등 대응방안 강구
 - 언론, 법원 판결문 등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미제출 기관 퇴직자 중 취업제한제도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실태점검 추진

[협조 요청 사항]

- 비위면직자등 발생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실시(전 공공기관)
 - 취업제한 안내 실시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등) 5년간 보관, 청렴 e시스템에 취업제한대상자 입력시 및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 요청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
 - ※ 취업제한제도 미안내로 인해 취업제한 위반으로 해임·고발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을 상대로 소송 등 문제제기 가능성 사전 차단
- 공공기관 채용규정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 규정 및 채용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공공기관 재취업 차단(전 공공기관)
 -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계약직, 공공근로계약 등 포함) '비위면직자 사전조회시스템' 및 채용후보자 원 소속기관에 대한 확인으로 채용후보자의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취업제한제도 교육·홍보 실시(전 공공기관)
- 비위면직자등 명단 관리 철저 및 발생 현황 통보(전 공공기관)
 - 상·하반기 각 1회 비위면직자등 명단 취합시 제출기한 엄수
 - ※ 해당 기관 소속 퇴직공직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거나 공무원 연금·군인연금 급여 제한자로서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명단 제출
 - ※ 처분변경 및 소송결과 등 반영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이 되거나 취업제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변경된 사항 입력
- 취업제한제도 위반여부 검토 철저 및 취업실태 현장점검 협조(해당기관)
 - ※ '취업제한규정 위반 없음'으로 의견 회신한 기관 중 검토가 부실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추진
 - ※ 퇴직 전 기관과 재취업기관간 업무관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업무관련성 심층검토

- ◇ 각급 기관이 소관 반부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 공유, 협업할 수 있는 기반 제공으로 반부패 역량 동반 상승

□ 범정부 통합 반부패 신고창구로서 「청렴포털」 본격 운영

○ 청렴포털을 통한 신고 및 보호·보상 서비스 확대

- (신고창구 확대) 권익위 외에도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직접 부패·공익 신고를 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인 청렴포털 개통(2월)
 - ※ 기관별 수요, 신고처리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스템 보급('20.2.~'22년)
- (신고편의) 정확한 부패유형(부패·공익 침해행위, 부정청탁·행동강령 위반 등)을 몰라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 ※ 외국인등록번호 연계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온라인 상담, 신고를 지원하고 영문 보호·보상 안내문 등 서비스 제공
- (보호·보상) 공공기관의 보호·보상 안내를 강화하고 위원회 외 타기관 신고에 대해 위원회 보호·보상 연계 기능 마련

< 청렴포털 주요 개선사항 >

구분	기존	개선
간편신고	▪ 신고자가 소관 법령에 따라 각 창구에 개별 신고	▪ 부패유형 구분 없이 하나의 창구에 신고
신고창구	▪ 권익위 ▪ 각급기관 개별 창구 (메일, 온·오프라인 창구 등)	▪ 청렴포털로 일원화 * 개별 운영 중인 신고창구 연계
타 기관 신고 보호·보상	▪ 신고관련 정보 입력 필요	▪ 신고 관련 중복 정보 입력 없이 보호·보상 신청

□ 반부패 정보 환류를 통한 반부패 업무 역량 강화

- 부패 예방, 반부패 업무 절차 효율화 등 정책 환류를 위해 반부패 빅데이터에 대한 공동 활용체계 구축 추진
 - (공직자) 각급 기관이 반부패 업무 처리 중 생산되는 정보에 대해 온라인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 ※ 지능정보분석기술 등을 활용해 업무처리 시 관련 신고사례·법령·시책 등을 자동 추천하는 맞춤형 지식서비스 제공 등
 - (국민) 반부패 청렴정책·정보를 공개하여 누구나 청렴포털에서 손쉽게 비교·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 반부패 정보의 지역별·월별·유형별 추이, 실시간 급증 반부패 검색 키워드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

[협조 요청 사항]

-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이용기관 시스템 개통에 따라 신고제도, 보호·보상안내문 등을 등록(해당기관)
- 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 중 생산되는 반부패 정보에 대하여 국가 청렴정보시스템(청렴마당)으로의 공유·공개 적극 협조(공공기관)
-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 대한 공공기관 권역별 교육 시 참여(공공기관)
 - ※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에 신규 구축된 기능(청렴도,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업무담당자 참석(개최계획 별도 통지 예정)
-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신고창구 등 연계 서비스 지원예정으로 연계 협조 (해당기관)
 - ※ 공공기관에서 청렴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신고, 반부패 정보를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동일하게 제공토록 프레임, Open API, 링크 방식의 연계 지원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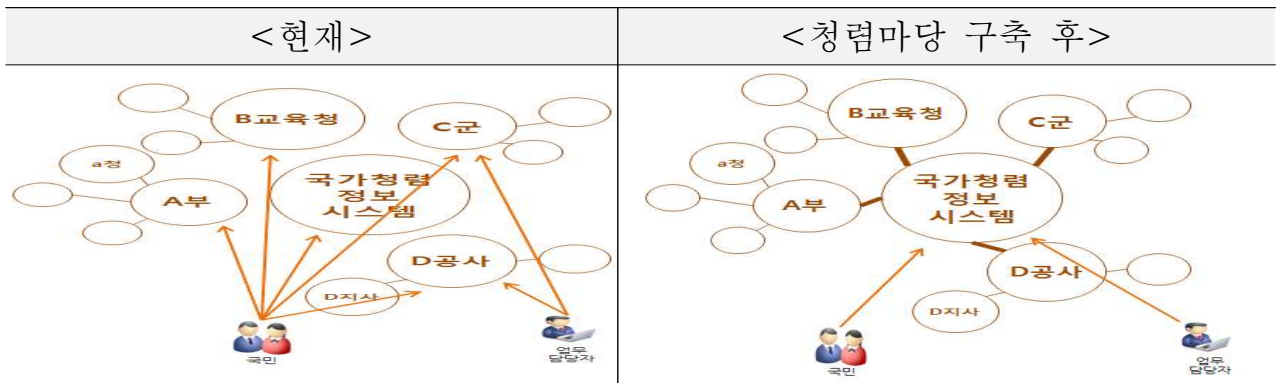
공공기관 청렴-e 시스템 개편사항

구 분	기 준	구 축 사 항
업무기능	▪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능 ▪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등 입력 ▪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및 관리 기능 ▪ 청렴교육 실적 입력 ▪ 부패영향평가 이행결과 입력 ▪ 이첩·송부 및 보호·보상 관련 자료 제출 및 관리 기능 ▪ 공익신고 운영 실적 입력	+ 청렴도 관련 자료제출 및 결과 조회 기능 + 공공기관 신고 접수·처리·관리 기능 + 공공기관 보상 신청·처리 기능 + 공공기관 반부패 정보 공개·공유 기능
관리기능	▪ 사용 권한에 따른 마이페이지 제공 ▪ 자주 쓰는 메뉴 설정	+ 신고 사건, 반부패 정보 공유방 등의 첨부 문서에 대한 자료 검색 기능 + 행정망 접속 기관의 경우 행정망에서 접속 기능 마련
권한	▪ 권익위는 공공기관 관리자 권한을 청렴업무 담당자 1인에게 부여 ▪ 세부 기능별 사용자 권한은 각급 기관 담당자가 부여 ▪ 이용자가 90일 이상 미접속시 권한 차단·중지	▪ 공공기관 기관운영자는 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의 기관 운영자 지정·운영 가능 ▪ 소속 기관의 기관 운영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사용자 권한 부여

참고 2 공공기관 청렴마당 서비스

□ 청렴마당 서비스란?

- 청렴포털 및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을 통해 반부패 정보를 공개·공유하는 서비스



□ 청렴마당 서비스 이용 방법

- 청렴e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 중 담당자가 공개 또는 공유 선택 시 청렴포털을 통해 대국민 공개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정보 공유 가능
 - ※ 관리정보 : 신고제도개요, 반부패관리지침, 부패공직자현황, 청렴활동, 신고사례 등
- 공공기관에서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반부패 정보를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동일하게 표출 가능토록 연계 기능 제공

The screenshot displays the '공공기관 반부패맵' (Public Institution Anti-Corruption Map) interface. It includes a search bar, a list of public institutions, and a section for '신고제도 개요' (Overview of Reporting System). The '신고제도 개요' section features a table with columns for '신고대상' (Reporting Target), '신고내용' (Reporting Content), and '신고방법' (Reporting Method). The table lists various reporting targets and their corresponding reporting methods, such as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Daegu Metropolitan City Education Office Unfairness Reporting) and '신고테스트' (Reporting Test).

1. 기본방향

- 2020년 국제반부패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사회·기업·국민 등 민간분야의 적극적 동참 도모
-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포럼을 통해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 글로벌 반부패 이슈에 대한 국내적 관심과 논의를 촉발

2. 주요 내용

〈 회의 개요 〉

- **회의명** :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 - Corruption Conference)
 - ※ 세계 최대 규모의 민관 합동 반부패 국제포럼으로, 격년 개최
 - ※ 제18차('18년 덴마크), 제17차('16년 파나마), 제11차('03년 한국), 제1차('83년 미국)
- **기간/장소** : '20. 6. 2(화) ~ 6. 5(금) / 서울 코엑스
 - ※ 6.1(월)~6.2(화)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총회 병행 개최
- **주최** : 국민권익위원회(대한민국 정부대표), 국제투명성기구(TI)
 -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18.4.18, 대통령 보고)' 포함 과제
- **규모** : 정부·학계·민간·언론 등 140여 개국 1,500~2,000여명 참석
 - ※ 회의 관례에 따라 개최식 환영사로 대통령 기조연설 추진
 - ※ 전체세션(6~8개, 약 2,000명 참석), 워크숍(50여개, 약 150~200명 참석)
- **주제** : “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
- **프로그램** : 본회의(개·폐회식, 전체세션, 워크숍)와 부대행사(반부패영화제·콘서트 등)

□ 세션 구성 및 운영

- **(전체세션)** 참석자 전원(약 2천명)이 참여하는 전체세션은 8개로, 국제적 주요 이슈에 대해 저명한 인사들의 논의와 참석자들의 질의·코멘트로 운영
- 세션별 주제에 맞춰 국내외 연사를 추천·섭외, 특히 국내 연사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
- ※ 전체세션 주제(안)

- ① (개막세션) 2030을 향하여: 진실, 신뢰, 투명성
(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
- ② (전체세션) 평화와 사회정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투명성 기준
(New Transparency Standards for Peace and Social Justice)
- ③ (전체세션) 가짜뉴스와 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Defending the Truth against fake news and manipulation)
- ④ (전체세션) 집단행동을 통한 신뢰회복
(Restoring Trust and Integrity by Collective Action)
- ⑤ (전체세션)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새로운 청렴 전략
(New Integrity Strategies for Society of Trust)
- ⑥ (전체세션) 부패자금과 면책 악순환의 고리 끊기
(Breaking Vicious Cycles of Dirty Money and Impunity)
- ⑦ (전체세션) 사회정의 강화를 위한 전략
(Strategic Paths to Advance Social Justice)
- ⑧ (폐막세션) 진실, 신뢰, 투명성을 위한 2030 의제 설정
(Shaping the 2030 Agenda for Truth, Trust and Transparency)

- **(워크숍)** 150~200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은 약 50개로, 전 세계 공모에 참여한 200여개 워크숍 중 선정(3월 중)
- 이 중 한국의 시민사회, 학계, 공공기관에서 기획·운영하는 워크숍(약 7개 예상)을 통해 우리의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국제적 이슈에 대한 한국적 고찰의 기회 확보

□ 부대행사 기획 · 추진

- **(Films for Transparency)** 내부고발자, 탐사보도기자 등의 다큐멘터리 약 6개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반부패 의미를 새롭게 고찰
- **(Fair Play Live Concert)** ‘반부패, 청렴, 사회정의’를 주제로 하는 전 세계 밴드(약 4개)의 콘서트를 통해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
- **(청년기자단)** 약 25명의 젊은 언론인(35세 이하)이 **회의취재와 연사 인터뷰**를 진행하고 **SNS** 등을 통해 전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
 - 청백리포터단(권익위), 대한민국정책기자단(문체부)도 청년기자단과 함께 활동하도록 하고 취재결과를 **권익비전**▶ 등에 방송
- **(토크콘서트)** 청년세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와 국민 권익위의 **청렴콘서트**를 통해 사회적 청렴공감대 형성에 기여
 - ※ 청년·학생, 일반시민 등의 참여 독려를 위해 등록비 없이 무료로 운영

□ 참가자 등록 및 지원

- **(참가자 등록)** IACC 홈페이지(<https://iaccseries.org>)를 통해 온라인 등록 진행 중이며, 행사기간 중 현장 등록도 병행 예정

< 회의 등록비 >

구 분	조기 등록 (‘19.12.20.~’20.4.30.)	직전 등록 (‘20.5.1.~)
일반 요금	400 유로	500 유로
할인 요금 (NGO·학계·학생)	300 유로	350 유로
동반자 요금	200 유로	250 유로
일일 요금	150 유로	

- **(참가자 지원)** 분야별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지원
 - (비자·출입국) 초청장 발송, 재외공관 협조, 입국허가 등(법무부, 외교부)
 - (공항 영송) VIP 참석자 의전 지원 등(인천공항공사, 주한 대사관)
 - (관세·검역) 신속통관, 검역 지원 등(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 (안전·교통) 안전점검, 교통·의료지원(경찰청, 서울시, 국무조정실 등)

□ 국내외 홍보

- **(일반 홍보)** 준비단계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사전 준비단계) 홍보 영상·포스터 제작 게시, (프로그램 기획단계) 보도자료 배포, (연사 초청 단계) 반부패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홍보**
 - 공공기관 홍보 협조를 통해 공공·민간분야 관심 유도 및 홍보 효과 극대화
- **(현장 홍보)** 행사장 내 **홍보부스, 체험관** 등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문화를 국제사회와 공유
 - 한국의 반부패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관심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등 홍보 콘텐츠 내실화

[협조 요청 사항]

- **(홍보자료 전파)** IACC 홍보 자료를 각 기관 내부 게시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대·내외 홍보하고 유관기관에도 전파 및 홍보 독려(전 공공기관)
 - ※ 홍보 영상, 포스터 등 관련 자료는 IACC 국문 홈페이지(www.iacc2020.kr)에 지속 업데이트될 예정으로, 수시로 참조하여 자체 홍보에 활용
 - ※ 추후 공문을 통한 협조요청 병행 예정(3월)
- **(IACC 참여)** 관심있는 직원의 참여를 안내·독려하고, 교육비·출장비 등의 예산을 활용하여 등록비·여비 등 지원(전 공공기관)
 - ※ 등록방법 : IACC 홈페이지(<https://iaccseries.org>)에서 온라인 등록
 - * (참고) 위원회 홈페이지 정책홍보 ☞ 공통자료 ☞ 국제홍보(52번 게시글)
 - ※ 추후 공문을 통한 협조요청 병행 예정(3월)
- **(부대행사 참여)** 등록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토크콘서트)에 직원 참여를 적극 독려(전 공공기관)
 - ※ 추후 프로그램 확정시 공문을 통해 별도 협조요청 예정(4월)

□ 출범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 사회각계가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기능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40인 이내로 구성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 청렴 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 운영 체계

- (실무기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하위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아젠다 상시 제안·논의
※ (민관협) 대표급 40명 이내, (실무협) 실무자 및 외부전문가 120명(분야별 20명) 이내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 : 국민 권익위원장/민간 : 위원 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 주재
※ (정기회의) 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 격월 / (수시회의) 필요 시
- (운영지원) 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청 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 각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사회협약 추진팀(가칭)을 구성할 것을 결정하면서, 청렴사회협약의 추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는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청렴사회협약 추진팀에 참여하고, 협의를 통하여 해당 분야의 협약 체결 및 이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2. 지역사회는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재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의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의 부패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찾고 청렴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인식 개선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3.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청렴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포함하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이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난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청렴사회협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에 청렴사회협약 실무 지침서(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2019년 4월 2일

청 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방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1. 정부와 국회는 지역 주민에게 정확한 겸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겸직현황을 공개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겸직신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한다.
2. 정부와 국회는 겸직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겸직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고, 지방의회는 조례 또는 규칙에 각 위반 유형에 관한 징계 수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한다.
3.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의 청렴성 제고를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취임 선서에 청렴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 지역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겸직에 관한 감시·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2019년 7월 11일

청 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여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전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게 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 관련 변호사 비용, 필요 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등 구조금 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지급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추적관리를 통해 불이익을 당한 것이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긴급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권익위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를 동일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여 각급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
4. 공익신고를 대리 접수하는 신고대행업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점검하고,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지침을 배포하는 등 신고대행업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공공계약 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체계가 구축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2019년 10월 14일

청 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아파트 先분양 제도 공정성 · 투명성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현재 시행 중인 아파트 先분양 제도를 악용한 일부 건설사의 무단 설계변경 · 하향시공 등 원가절감 관행을 생활적폐로 규정하면서, 건설사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반칙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아파트 先분양 제도의 공정성 ·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정부는 건설사의 무단 설계변경에 따른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입주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준공도면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하자를 판정하도록 하고, 건설사로 하여금 설계도면 준수 여부 등 감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2. 정부는 건설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내 · 외장재를 임의로 하향 변경하는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중요 내 · 외장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내 · 외장재의 변경은 반드시 기존 자재보다 더 높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제한하며, 건설사로 하여금 내 · 외장재의 변경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3. 정부는 아파트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항목을 규정하고, 마감자재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감리 사항에 포함한다.
4. 정부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택법에서 정한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및 사용검사가 철저하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2019년 12월 12일

청 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에 기회균등과 능력의 실증 원칙을 확립하고 사학비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사립학교 학사행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1.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제도(가칭)'를 도입하여 기초적인 업무능력과 기본소양에 관한 교육청의 평가를 거친 자에 한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경쟁채용의 원칙을 명시하고, 교육청 평가를 거쳐 공개경쟁채용 되지 않은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를 지원하지 않는다.
3. 사립학교 이사 또는 학교장의 친인척이 해당 학교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직원의 소관 업무를 관할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한다.

2019년 12월 12일

1. 기본방향

- 권익위의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 감사 면책을 함으로써 일선 행정기관(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유인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3.14), '적극행정 추진방안' 중

-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감사 면책

2. 주요 내용

- 권익위는 고충민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각급 기관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함

* 시정권고 :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견표명 :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조치는 책임 면제가 가능*함에도 각급기관에서는 감사 우려를 이유로 권고 수용 및 이행에 소극적

* 국민권익위 권고는 국회,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15인의 위원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결정

[협조 요청 사항]

-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면책
 - 권익위 권고 등의 이행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조치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 ①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②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③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 각 기관별 자체 감사 또는 적극행정 규정에 반영

사례 :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19.6.27. 일부개정·시행)

제25조(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에 따라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권익 적극구제 필요

※ 지방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기관

2. 주요 내용

- 지방옴부즈만이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처리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수용성 증대
 - 원처분 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원처분 부서가 재차 당해 민원을 처리하는 모순 해소
- 지방옴부즈만은 의견표명 기능이 있어 행정기관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가능
 - 행정소송 등 사법구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체 시정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서민을 위한 제도
- 민원처리의 기본법령인 「민원처리법시행령」에 고충민원 처리기관으로 지방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 포함(시행 '19.6.4.)

[협조 요청 사항]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지방옴부즈만 적극 설치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컨트롤타워로서의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 강화			
①	부패방지·공정성 향상 과제 적극 발굴	연2회	해당 기관
②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실적 제출	분기별	해당 기관
2.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①	법령 개선 및 취약분야 발굴·개선대책 마련 협조 자료 제출, 의견 개진, 점검 협조	연 중	대상 기관
②	제도 운영 현황 서면조사 자료 제출·현지 점검 협조 (서면) 1, 7월 / (점검) 4~6월, 10~12월	연 중	(서면) 전 공공기관 (점검) 대상 기관
③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참석	연 9회	전 공공기관
④	교육 수요 파악 및 국민권익위에 요청, 각종 교육·홍보 자료 활용·전파	연 중	전 공공기관
3.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운영			
①	생활적폐 과제 소관기관별 개선대책 추진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월별	해당 기관
②	자체 생활적폐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연 중	광역 지자체
4.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 개선 추진			
①	소관 업무 관련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발굴하여 권익위에 제출	~3.31.	중앙행정기관
②	우수 과제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협조	12월	해당 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5.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①	정기 전수조사 후속조치(비리 연루자 제재, 피해자 구제 등) 및 제도개선 적극적 이행 및 점검 협조(전 공공기관)	연 중	전 공공기관
②	해당 민간분야와 공정채용협약 등 공정채용대책 민간확산 적극 이행(전 공공기관)	연 중	전 공공기관
6. 행동강령 내재화 및 이행점검 강화			
①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 사항 제출	제·개정안 초안 마련 후	공직유관단체
		제·개정 완료 후	전 공공기관
②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4월/11월	해당 기관
③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이행실태 점검시 자료제출 등 협조	연 중	전 공공기관
④	소속 공직자 대상 행동강령 자체 교육 실시	연 중	전 공공기관
⑤	부패취약시기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 강화	연 중	전 공공기관
7.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확대			
①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통보에 따른 자료·의견 제출	3월	측정·평가대상 공공기관
②	국가청렴정보시스템(청렴e시스템)에 부패방지 우수시책 등록	~3.31	'19년 시책평가 우수기관
③	'19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실적 제출	~3.31	측정·평가대상 공공기관
④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담당자 워크숍 참석	5~6월중	측정·평가대상 공공기관
⑤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에 따른 자료 제출	7~8월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⑥	현지점검 대상기관 선정 통보에 따른 점검사항 협조 (청렴도 측정 : 상·하반기, 부패방지 시책평가 : 하반기)	상·하반기	측정·평가대상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8.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①	기관별 권고 이행현황 자체 점검 결과 제출	반기별	전 공공기관
②	이행실적 미흡기관 컨설팅 수요 제출	5월	이행실적 미흡기관
③	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④	제도개선 이행효과 산출·계량화 제출	연중	전 공공기관
9.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활성화			
①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자료제출 및 실태조사 협조	연중	해당 기관
②	소관 법령 제·개정 시 입법예고와 동시에 부패영향평가 의뢰	연중	중앙행정기관
③	제·개정 자치법규·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의뢰(필요 시)	연중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④	개선권고 이행 및 이행점검 협조	연중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⑤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신청 및 참여	연중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10. 공직자·국민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추진			
☐ 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①	청렴교육강사 활용 기관자체 청렴교육 운영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공지 및 참여 독려	연중	전 공공기관
③	교육훈련기관 기본교육과정(신규자·승진자 등)에 청렴교육 교과목 필수 배정	연중	전 공공기관
④	'19년도 교육운영 실적 미제출기관 청렴e시스템 입력	즉시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홍보 및 참여 활성화			
①	청렴콘텐츠 공모전 적극적 홍보 및 참여 독려	연중	전 공공기관
□ 2020 반부패 주간 운영			
①	2020 반부패 주간 청렴문화 확산 활동 추진	12월	전 공공기관
11.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의 구체적 성과 확산			
①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정책제안 해당기관 적극 검토	상반기	기재부, 행안부 법무부, 국토부 교육부, 감사원 지자체, 교육청 등
②	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세부실천과제 선정·이행 평가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③	1기관 1청렴 실천운동 전개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	연중	전 공공기관
④	공공기관 협력사 상생워크숍 시 청렴경영 교육과정 마련 협조	연중	공직유관단체
⑤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참석	4·7·10월	전 공공기관
⑥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제도개선 권고 적극 반영	연중	전 공공기관
12.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시행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			
①	일반국민, 수급자 등 대상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내용 및 사례 등 적극 홍보	연중	전 공공기관
②	기관별 공공재정지급금 해당사업 현황조사 협조 요청	상반기	전 공공기관
③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현황 이행실태 점검 협조 요청	하반기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3. 부패·공익신고 사건처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①	각급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 홍보	수시	전 공공기관
②	조사기관에 신고사건 이첩·송부 시, 신속한 조사처리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 협조 요청	수시	해당 기관
③	이첩사건에 대한 소청·소송 등에 따른 실질적·최종적인 조사결과 제출 요청	수시	해당 기관
14.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로 사회 전반의 자정노력 촉진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시 신규 대상법률 소관 부처는 각급 기관에 관련 내용 전파	법 개정시	해당 중앙부처
②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운영지침 마련 및 개정 사항 반영	연중	전 공공기관
③	공익신고제도 운영현황 조사 시 자료제출 협조	~3.6.	해당 기관
④	각급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 홍보	연중	전 공공기관
⑤	위원회가 실시하는 신고자 보호·비실명대리신고 교육에 적극 참여	3월~6월	전 공공기관
⑥	신고자 보호기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적극 참여	4월 예정	전 공공기관
⑦	신고자 재취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하반기	해당 기관
15.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①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연중	해당 기관
②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금의 적기 납부	연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③	부패·청탁 및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연중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6.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①	비위면직자등 발생시 반드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②	공공기관 채용규정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 규정 및 채용공고문 등에 명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취업제한제도 교육·홍보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④	비위면직자등 명단 관리 철저 및 발생 현황 통보 * 상·하반기 비위면직자등 명단 취합시 제출기한 엄수	연중	전 공공기관
⑤	취업제한제도 위반 여부 검토 철저 및 취업실태 현장점검 협조	연중	해당 기관
17.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반부패 업무 혁신			
①	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 중 생산되는 반부패 정보를 국가 청렴정보시스템에서 공유·공개 적극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②	'20.2월 개통된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권역별 교육 시 참여	상반기	전 공공기관
③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신고창구 등 연계 서비스 지원예정으로 연계 협조	연중	해당 기관
협조사항 1.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①	홍보자료 전파 IACC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참여	~20.6월	전 공공기관
②	IACC 참여 직원 참여 독려 및 등록비 등 비용 지원	~20.6월	전 공공기관
③	부대행사 참여 무료 문화 프로그램에 직원 참여 독려	~20.6월	전 공공기관
협조사항 3.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 감사 면책			
①	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면책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자체 감사 또는 적극행정 규정 개정	~20.6월	전 공공기관
협조사항 4.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①	지방옴부즈만 설치(미설치 기관)	지속	지방자치단체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2
분야별 업무담당자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총괄과	조유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관리,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관리, 반부패주간 운영	044) 200-7613	044) 200-7939
	김경용		044) 200-7612	
	서지만		044) 200-7618	
	나현성	부패인식지수 대응 및 제고대책 수립	044) 200-7619	
	한건희	청렴컨설팅, 청렴교육 의무화 이행관리	044) 200-7616	
생활적폐 TF	박정구	생활적폐 개선대책 추진	044) 200-7711	044) 200-7939
	임채식		044) 200-7717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박홍상	채용비리 근절업무 기획·총괄	044)200-7296	044) 200-7964
	이동현	실태조사 후속조치 등 이행	044)200-7127	
	장대근		044)200-7294	
	윤수성		044)200-7289	
	백초롱		044)200-7293	
청렴조사 평가과	이진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044)200-7632	044) 200-7940
	서현우	부패방지 시책평가	044)200-7634	
	한은실		044)200-7638	
부패영향 분석과	김상기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044) 200-7663	044) 200-7941
	민경선	개선권고 이행점검	044) 200-7656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탁금지제도과	이주현	청탁금지제도 업무 총괄	044) 200-7704	044) 200-7944
	이민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 제도 운영·상담	044) 200-7705	
	장성규 허지은	유권해석 질의답변	044) 200-7708 044) 200-7709	
	임재훈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홍보	044) 200-7707	
	김윤구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 제도 운영·상담	044) 200-7706	
	남궁솔잎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상담	044) 200-7710	
행동강령과	이덕희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상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도 운영·상담	044) 200-7672	044) 200-7942
	한세근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상담	044) 200-7675	
	정나리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상담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도 운영·상담	044) 200-7670	
심사기획과	박희정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 200-7696	044) 200-7943
	송영희	부패신고 정책 기획	044) 200-7694	
	류지호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실태조사	044) 200-7684	
	권나라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044) 200-7688	
	안진희	범국가적 청렴포털 구축	044) 200-7695	
	박종환	이첩사건 사후관리	044) 200-7697	
공익심사TF	구양미	공익신고사건 사후관리	044) 200-7242	044) 200-7943
부패심사과	한수지	부패신고사건 사후관리	044) 200-7720	044) 200-7946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김선미	복지·보조금신고사건 사후관리	044) 200-7584	044) 200-7977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보호보상 정책과	김옥희	부패·공익신고 교육·홍보, 민간협력	044) 200-7754	044) 200-7948
	전인혜	신고자 보호·보상 법령·제도운영	044) 200-7752	
	이진아	신고자보호 운영지침 표준안	044) 200-7757	
	김건호	공공기관 신고제도 운영현황 조사	044) 200-7755	
신고자 보호과	최진경	신고자 보호 총괄	044) 200-7776	044) 200-7949
	김동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044) 200-7773	
	전이슬		044) 200-7779	
신고자 보상과	최승남	신고자 보상 총괄	044) 200-7739	044) 200-7947
	권문택	부패 보상·포상·구조금 사건 처리	044) 200-7742	
	김평곤		044) 200-7743	
	안병민		044) 200-7744	
	송경아		044) 200-7746	
	이형권		044) 200-7747	
	송원용		044) 200-7748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한명진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043) 901-6116	044) 200-7973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윤소영	청렴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043) 901-6142	
	조문제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강사관리	043) 901-6143	
	윤소영	찾아가는 청렴콘서트 운영	043) 901-6142	
	김덕희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043) 901-6133	
	박종완	지방의회 의원 대상 청렴교육 운영	043) 901-6148	
	배슬기	청렴 대면교육 교육생 모집 등	043) 901-6149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제도개선 총괄과	추수진	제도개선 기획총괄	044) 200-7221	044) 200-7921
	정희찬	제도개선 사후관리	044) 200-7219	
	손상수		044) 200-7220	
IACC 준비기획단	조혜림	IACC 홍보 콘텐츠 기획 IACC 무료 문화프로그램 참여	044) 200-7153	044) 200-7916
	부지연	IACC 참가자 등록	044) 200-7105	
민간협력 담당관실	최현민	민간협력 업무 총괄	044) 200-7162	044) 200-7917
	양용석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지원 1기관 1청렴실천운동, 청렴문화 확산	044) 200-7160	
	한정운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 지원	044) 200-7163	
	정은수	(중앙)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정책의제 논의 및 회의운영 등 지원	044) 200-7164	
	박세희	청렴경영 지원사업 운영	044) 200-7166	
	이나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지원	044) 200-7167	
민원조사 기획과	최명식	고충민원 기획	044-200-7312	044) 200-7928
	박숙경	고충민원 권고 사후관리	044-200-7317	
	강우성	지방옴부즈만 지원 활성화 사업	044-200-7313	
	박영아		044-200-7316	